

□ 변경 대비표

신한퇴직연금커버드콜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

변경시행일: 2023년04월13일

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규약 상 투자목적 사항 명확화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규약 상 투자목적 사항 명확화: 제14조(투자목적)	제14조 (투자목적)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신설>	제14조 (투자목적)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b>또한 해당 모투자신탁은 KOSPI200 커버드콜 ATM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b>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」 개정사항 반영
-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
- 3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
- 4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
- 5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」 개정사항 반영: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] 신한커버드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, 신한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 <주석 신설>	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] 신한커버드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, 신한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 주석: <b>증권의 대여/차입 거래의 목적</b>
1. 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」 개정사항 반영: 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 <신설>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 <b>증권 대차거래 위험</b>
1. 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」 개정사항 반영: 제3부 1. 재무정보	제3부 1. 재무정보 가. 요약재무정보 <주석 신설>	제3부 1. 재무정보 가. 요약재무정보 주석: <b>- 증권대차 거래에 따른 수수료의 또는 비용</b> <b>- 주식의 매매회전을 등</b> <b>-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별 거래비용</b>
2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: 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 <b>8.67%</b> , 4등급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 <b>9.00%</b> , 4등급
2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: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b>-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)</b>
2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: 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<b>-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 및 2023년03월31일)</b>
3.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: 제2부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제2부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(3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 A. 세액공제: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b>400만원</b> 이내의 금액+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<b>700만원</b>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.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<b>4천만원 이하</b>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b>400만원</b> 이내의 금액+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<b>700만원</b> 중 적은 금액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	제2부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(3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 A. 세액공제: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b>600만원</b> 이내의 금액+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<b>900만원</b>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. - 단,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<b>4천 500만원 이하</b>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b>600만원</b> 이내의 금액+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<b>900만원</b> 중 적은 금액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. (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

	<p>- 다만, 2020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연금계좌에 가입한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 적용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금액(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금액)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p>	<p>&lt;삭제&gt;</p>
	<p>B. 과세 이연: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,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</p> <p>C.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: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.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은 연간 1,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. <b>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<a href="http://pension.fss.or.kr">http://pension.fss.or.kr</a>)의 '과세제도안내' 참조</b></p>	<p>B. 과세 이연: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,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</p> <p>C.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: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.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은 연간 1,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. <b>연금소득이 1,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. (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</b></p>
	<p>&lt;주석 추가&gt;</p>	<p>※ 연금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(<a href="https://100lifeplan.fss.or.kr">https://100lifeplan.fss.or.kr</a>)의 '연금세제안내'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4.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<b>-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3년03월31일)</b>
5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: 제2부 4. 집합투자업자	제2부 4. 집합투자업자	제2부 4. 집합투자업자 <b>-최근현황갱신</b>
5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(단위: 백만원) 라. 운용자산 규모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 <b>-최근현황갱신</b>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(단위: 백만원) <b>-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)</b> 라. 운용자산 규모 <b>-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3년03월31일)</b>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
-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: 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투자비용,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투자비용,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<b>-최근현황갱신</b>
2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<b>-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3년03월31일)</b>